# 2024학년도 사랑과 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이리동북 교육과정 설명회

B. ;;;

3

2024. 3. 20



## 목 차

I.	학교현황	1
1.	연혁 개요	. 1
	교직원 현황	
3.	학생 현황	. 1
4.	시설 현황	· 1
П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2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 진단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학생평가 운영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 10
Ш.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13
1.	학교폭력의 정의	13
2.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15
3.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	15
4.	성비위 예방	16
5.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29
IV.	인권 교육	21
	인권과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	
	가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가정에서의 흡연 예방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통합교육 및 장애공감교육	
V.	안전 교육	26
- •	·	
VI.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 만들기	27
VII.	교육활동 침해 예방	29

## I. 학교 현황

### 1. 연혁 개요

년 월 일	개 요
1983. 8. 10.	이리동북국민학교 설립 인가 (24학급)
1983. 9. 1.	이리동북국민학교 개교 (16학급)
1983. 9. 9.	개교식 거행
1984. 3. 10.	병설유치원 개원 (1학급)
1993. 3. 1.	특수학급 설치 (1학급)
1996. 3. 1.	이리동북초등학교로 교명 개칭
2009. 3. 1.	교육복지우선사업학교 선정
2022. 3. 1.	제 16대 유옥엽 교장 부임
2023. 2. 7.	제40회 졸업(48명, 총 7,806명 졸업생 배출)
2023. 3. 1.	초등학교 18학급(개별반 2학급 포함)・유치원 1학급 편성

### 2. 교직원 현황

구분 성별	교장	교감	부장 교사	수석 교사	교사	특수 교사	보건 교사	영어 강사	유치 원교 사	교육 복지 사	교무 실무 사	행정 실장	주무 관	기타	계
남	1	0	2	1	2	0	0	0	0	0	0	1	1	2	10
여	0	1	4	0	12	2	1	1	1	1	1	0	2	13	39
계	1	1	6	1	14	2	1	1	1	1	1	1	3	15	49

### 3. 학생 현황

학	년	1	2	3	4	5	6	개별학습실	계	유치원
학	급수	3	3	2	2	3	3	(2)	14(2)	1
<u></u> 학	남	19	18	15	23	30	31	3	136	2
생	व	25	25	25	17	33	26	9	151	9
_ 수	계	44	43	40	40	63	57	(12)	287(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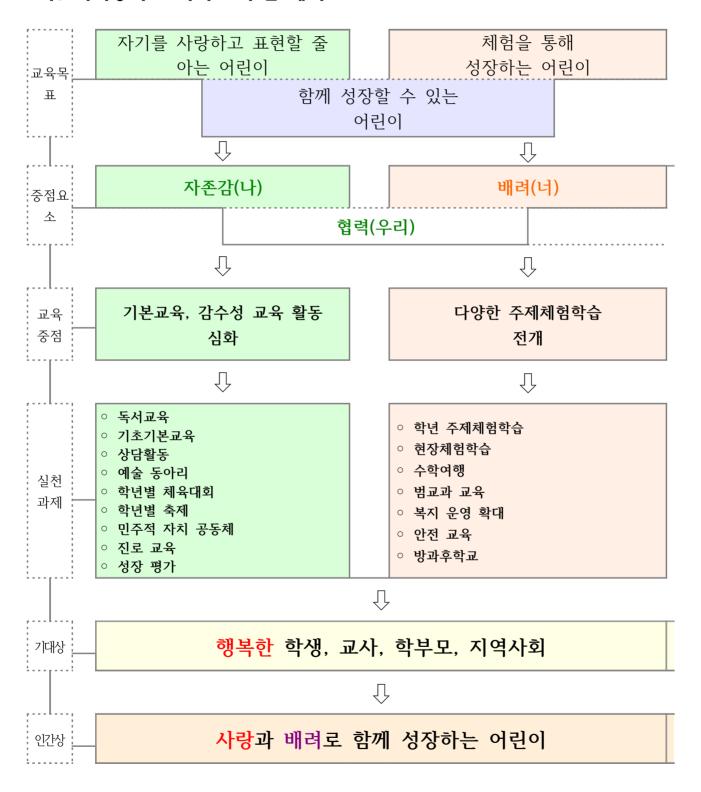
### 4. 시설 현황

	L 는	1					건	ם ן	년 2					ᄎ	<b> </b>  육	장						교	귀운	]			계							
면	] 2	닉					2,8	341	m³					13	,46	$7 \mathrm{m}$	l <sup>2</sup>					325	5m	2					16,0	633	3 m³			
구 분	교실	개 별 실	과 학 실	영 어 실	퓨	서	예 술 놀 이 터	보건교육실	학 생 자 친 실	강 당	보 건 실	육	복지상담실	방과후교실	방과후운영실	돌 봄 교 실	식 생 활 관	놀 이 활 동 실	체육활동실	수 학 체 혐 실	조 리 실 습 실	수 석 교 사 실	에듀테크실	유 치 원	연 구 실	교 장 실	교 무 실	행 정 실	방 송 실	운영위원회실	학 부 모 교 실	상 담 실	숙 직 실	창 고
<u></u> 수	16	2	1	1	1	1	1	1	1	1	1	1	1	3	1	2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
분석결과	•	지	<u>속</u> ?	턱인	<u></u>	ᆫ후	. 人	설	정	비	己	시식	널 !	긫 :	환경	3 7	- 개선	j																
교육과정 반영요소	•	학 비	급 담 (	수 ]	-	가 아 5		 따리 강人		 주 수	· 한 · 언		실- 감	을 마	 방고 려	<b>부후</b>	- 곁	용	실i	로 :	활용	3_												

### II. 2024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 1. 교육과정 운영

#### 가. 이리동북 교육목표 구현 계획



#### 나. 교육중점활동



### 🧣 예술 동아리 활동 심화

- 예술 강사 활용 수업(1~2학년 국악)
- 학생동아리 활동(4~11월)
- 학년 축제 주간 운영(12.2~12.6)
- 방과후 예술 부서 개설



### 🗣 다양한 주제 체험학습 확대

- 학년 주제 체험학습
- 2, 5학년 안전체험(4.2/4.17)
- 3. 4학년 생존 수영 교육(10시간)
- 학년별 주제체험 학습(연중)
- 6학년 테마식현장체험학습(5.27~5.28)

o 학년별 장·단기 프로젝트 학습(연중)

ㅇ 교과관련 현장체험학습 1학기: 4월 중, 1~5학년

2학기: 10월 중, 1~6학년



#### 🦀 민주적 자치 공동체 활성화

- 학급, 학생회 조직(3월)
- 다음학년도 학생회 조직(12월)
- 학급, 학생회 회의 활성화
- 학생 자치실 운영



#### 참된 인성교육으로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 학년체육대회주간(5월)
- 학년축제운영주가(12월)
- 안전교육(7영역, 1~6학년 51시간)
-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프로그램
- ㅇ 집단 프로그램
- 지속적인 상담활동
- 친구사랑주간 운영(3월/9월)

- 학교·가정폭력예방교육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 장애이해교육 및 인권교육
- 에너지절약교육
- ㅇ 다문화교육
- 통일교육
- ㅇ 양성평등교육
- 성교육(성폭력 예방)
- ㅇ 저작권교육
- ㅇ 진로교육
- 방과후학교(9개 부서)
- 돌봄교실(오후반 2개)

### 다. 학사일정

2024년도 1학기 이리동북초등학교

202	<u>'</u> 4	년도 1학기													이	리.	동북초등학교
		3월	<u>4월</u>					5월		_	6월			7월		_	8월
1 1	급	삼일절	1	월		1	수	<u>재량휴업일</u>	1	토		1	월	성교육주간 (7.1~7.5)	1	목	
2 4	昆		2	화	안전체험학습 (2학년)	2	목		2	일		2	화		2	급	
3	길		3	수	학급어린이회의 (4,5,6학년)	3	금		3	월		3	수	학급어린이회의 (4,5,6학년)	3	토	
4	월	시업식 입학식	4	목		4	토		4	화		4	목		4	일	
5 3			5	금		5	일		5	수	학급어린이회의 (4,5,6학년)	5	금		5	월	
6	수		6	토		6	월	대체공휴일	6	목		6	토		6	화	
7 -	목	전담수업시작	7	일		7	화	체육대회주간 (5.7~5.10)	7	금	<u>재량휴업일</u>	7	일		7	수	
8 1	금		8	월		8	수	학급어린이회의 (4,5,6학년)	8	토		8	월	외국어교육센터 (7.8~7.12, 5학년)	8	목	
9 1	Ē		9	화		9	목		9	일		9	화		9	급	
10	길		10	수	22대국회의원선거	10	금		10	월	생존수영교육 (4학년,10~14오전)	10	수		10	토	
11	-			목		11	토		11				목		11		
12 3			12			12	일		12	수		12	금		12	월	
13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3학년, 5 학년)	13	토		13	월		13	목		13	토		13	화	
14	목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5학년)	14	일		14	화		14	금		14	일		14	수	
15 t	급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5학년) 학급어린이회조직 (4,5,6학년)	15	월	장애공감주간 (4.15~4.19)	15	수	부처님오신날	15	토		15	월		15	목	광복절
16	토		16	화		16	목		16	일		16	화		16	금	
17	일		17	수	안전체험학습 (5학년)	17	금		17	월	통일교육주간 (6.17~6.21)	17	수		17	토	
18	듿	자율평가(6학년)			봄 현장체험학습 (4,5학년)	18	토		18	화		18	목		18	일	
19 3	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6학년)	19	금	봄 현장체험학습 (1,2,3학년)	19	일		19	수		19	금		19	월	
20 =	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6학년) 교육과정설명회		토		20	월	학부모상담주간 (5.20~5.24)	20	목		20	토		20	화	
21 =	목		21	일		21	화		21	급		21	일		21	수	여름개학식
22 Ē	금		22	월	기후변화교육주간 (4.22~4.26)	22	수	학부모공개수업	22	토		22	월		22	목	전담수업시작
-	Ē			화		23	목		23	일			화	전담수업종료	23	급	
	길			수		24	금		24				수		24	토	
25	월	학생동아리조직 (4,5,6학년)	25	목		25	토		25	화		25	목	1-1-1-1	25	일	
26 3	화		26	급		26	일		26	수		26	급	여름방학식 <b>방과후학교 방학</b>	26	월	
27	수		27	토		27	월	흡연약물마약예방 교육주간(27'31) 생존수영교육 (3학년,27'31오후) 6학년 테마식현장 체험학습	27	목		27	토		27	화	
28 =	목		28	일		28	화	6학년 테마식현장 체험학습	28	급		28	일		28	수	
29 🖥	금	전교어린이회조직 (4,5,6학년)	29	월		29	수		29	토		29	월	방과후학교 방학	29	목	
-	토		30	화		30	목		30	일			화		30	금	
31	길					31	금					31	수		31	토	
수업	일	20			21			20			18			20			1 / 7

2024년도 2학기 이리동북초등학교

	1년도 2억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	8 국소등학교 
1 일		1	화		1	금		1	일		1	수	<u></u> 신정	1	토	
2 월	=17,17,27	2	수	학급어린이회의 (4.5.6학년)	2	토		2	월	학년축제주간 (12.2~12.6)	2	목		2	일	
3 화		3	목	(4,3,0억년) 개천절	3	일		3	화	(12.2 12.0)	3	금		3		겨울개학식
4 수	원고하기하위하	4	금	<u> 재량휴업일</u>	4	월		4	· 수		4	토		4	화	12 , 1 ,
5 목		5	토	<u> </u>	5	화		5	목		5	일		5	· 수	
6 금		6	일		6	수	학급어린이회의 (4,5,6학년)	6	금		6	월		6	목	
7 토		7	월		7	목	(4,5,6약년)	7	토		7	화		7	금	종업식 졸업식
8 일		8	화		8	-		8	일		8	기 수		8	토	졸업식
9 월	<u> 재량휴업일</u>	9		한글날	9	토		9	월		9	- 목		9	일	
10 화		10		CCE	10				화		10			10		
10 기 11 수		11			11			11			11	토		11		
12 목		12			12				목		12	일		12		
13 금		13			13				금		13			13		
14 토		14			14			14			14			14		
15 일		15	화	가을현장체험학습 (3,4,5학년)	15	금		15	일		15	수		15	토	
16 월	추석연휴	16	수	(0,4,54 12)	16	토		16	월		16	목		16	일	
17 화	추석	17			17	일		17	화		17	금		17		
18 수	추석연휴	18	금	가을현장체험학습 (1,2,6학년)	18	월		18	수		18	토		18	화	
19 목		19		(1,4,04 %)	19	화			목		19	일		19	수	
20 금		20	일		20	수		20	금		20	월		20	목	
21 토		21	월	독도교육주간 장애공감주간 (10.21~10.25)	21	목		21	토		21	화		21	금	
22 일		22	화		22	금		22	일		22	수		22	토	
23 월		23	수		23	토		23	월		23	목		23	일	
24 화		24	목		24	일		24	화	전담수업종료	24	급		24	월	
25 수		25	금		25	월		25	수	성탄절	25	토		25	화	
26 목		26	토		26	화		26	목		26	일		26	수	
27 금		27	일		27	수		27	금	전교어린이회조직 (3,4,5학년)	27	월		27	목	
28 토		28	월	기후변화교육주간 (10.28~10.31)	28	목		28	토		28	화	설연휴	28	금	
29 일		29	화		29	금		29	일		29	수	설날			
30 월		30	수		30	토		30	월	겨울방학식 <b>방과후학교 방학</b>	30	목	설연휴			
		31	목					31	화	방과후학교 방학	31	그				_
수업일	17			20			21			20			0			5

※ 수업일수 : 1학기 100일, 2학기 90일 계:190일

#### 2. 기초학력 진단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학생평가 운영

### □ 학생평가 주요 방침

- (과정중심평가) 평가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를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학습 성과를 파악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
  -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개별학생 학기별 평가 결과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
- (성취기준 기반 평가)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운영
  - 성취기준에 기반한 학습 수행과정과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 확인
- (교수·학습 평가 연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기록
  - 학생의 학기 중, 학년(학기) 단위 성취수준과 교과학습발달상황(NEIS) 기록 연계
- (학교별 평가)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생평가 시행
  - 지역과 학교의 특성,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학생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 □ 초등 학생평가 시행 흐름도

	3월		7월		12월
1.평가사기	<b>진단평가</b> *(1학기초)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형성평가 (학기중)	총괄평가 (1학기말)	형성평가 (학기중)	총괄평가 (2학기말)
2평가주관	국가	우리학교 교사	우리학교	우리학교 교사	우리학교
3.평가바상	3,5,6학년**	전학년	4,5,6학년	전학년	4,5,6학년
4.평가교과	국,수,영 실시	전과목	국,수,영,(사,과)	전과목	국,수,영,(사,과)
5.평7방법	선다형, 연결형 등 (지필 및 온라인평가)	다양한 평가방법	선다형, 단답형 서·논술형 등	다양한 평가방법	선다형, 단답형 서·논술형 등

#### 과정중심평가

- ※ 3.5.6학년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지율평가 결과 성취수준 1수준인 경우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이 아닌 2.4학년은 전체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 \*\* 4학년은 자율평가 문항 개발 중(2025학년도 제공 예정)

### 3.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가. 방과후학교 부서별 활동

순	부서명	활동일	활동반	해당학년	운영요일	일, 시간	수강료(원)	장소
					<수>	<금>		
		수,금	Α	통합	13:50~14:30	13:00~13:40	20 000	컴퓨터실
1	컴퓨터	(40분)	В	통합	14:35~15:15	13:50~14:30	28,000 (교재비 별도)	12년 (본관3층)
		(40正)	С	통합	15:20~16:00	14:35~15:15	(,	(===0,
			D	통합	16:05~16:45	15:20~16:00		
					<월,수>	<금>		
		의 人 그	A	1~2학년	13:50~14:30	13:00~13:40	33,000	영어실
2	영어부	월,수,금 (40분)	В	1~2학년	14:35~15:15	13:50~14:30	(교재비 별도)	(한자실 병교(초)
		,,	С	3~4학년	15:20~16:00	14:35~15:15	,	별관4층)
			D	5~6학년	16:05~16:45	15:20~16:00		
					<화	, 목>		
		히 모	А	1~3학년	13:50 <sup>-</sup>	~14:30	28,000	그리기실
3	그리기	화,목 (40분)	В	통합		~15:15		그디기열 (별관4층)
		, ,	С	통합		~16:00		, ,
			D	통합		~16:45 ·		
		임사		==:		,수>		토탈공예실
4	토탈 공예	월,수	A	통합		~14:30	28,000 (재료비 별도)	(창의과학실
	0 41	(40분)	B C	통합 통합		~15:15 ~16:00	(제표미 글도)	별관4층)
			U			~10·00 ,목>		
			A	1~2학년		-14:30		-11-1
5	   한자	화,목	В	통합		~15:15	28,000	한자실 (영어실
		(40분)	C	통합		~16:00	(교재비 별도)	변관4층)
			D	통합		~16:45		
					<수>	<금>		
	반소	수,금	А	1~2학년	13:50~14:30	13:00~13:40		방송댄스실
6	방송 댄스	(40분)	В	1~4학년	14:35~15:15	13:50~14:30	28,000	(본관2층
			С	3~6학년	15:20~16:00	14:35~15:15		예술놀이터)
					<화	, 목>		
		= 0	А	1~2학년	13:50	~14:30		창의과학실
7	창의 과학	화,목	В	1~3학년	14:35	~15:15	28,000	(토탈공예실
	파릭	(40분)	С	4~6학년	15:20	~16:00	(재료비 별도)	별관4층)
			D	통합	16:05	~16:45		
					<화	, 목>		
	음악	화,목	А	1~2학년	13:50~14:30		28,000	זוכו
8	줄넘기	(40분)	В	2~3학년	14:35	~15:15	20,000	강당
			С	4~6학년	15:20 <sup>-</sup>	~16:00		
					<월,=	누,금>		
	축구	월,수,금	А	1~2학년	13:50	~14:30	22 000	운동장
9	<u></u>	(40분)	В	통합	14:35	~15:15	33,000	(우천시 강당)
			С	통합	15:20	-16:00		

#### 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1) 운영기간 : 2024년 3월 ~ 2025년 2월 (12개월)

2) 지원 대상

순위	구분	내용
1	우선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 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자녀
2	소득에 따른 지원	○ <u>중위소득 80% 범위</u> 에 속하는 자
3	학교장 추천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의 15% 미만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탈락하였거나 부득이하게 신청할수 없는 경우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임 추천서로 대신함(사유 자세히)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4	다자녀 다문화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자 녀, 다문화 각각 지원 -다자녀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의 10% 미만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함 -다문화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의 10% 미만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함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 ※ 학교장 추천 및 다문화, 다자녀 추천 시 공정성 강화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한다.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 3) 지원영역: 수강료 및 교재비
- 4) 지원금액: <u>2024학년도 1인당 연간 60만원(적극적 참여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u> <u>대 80만원까지 지원 가능)</u>
  - \*\*자유수강권을 신청한 월 이전에 납부한 수익자 부담금은 환불 불가
  - 수강료와 교재비를 포함하여 연간 60만원이 넘지 않도록 신청해야 함
  - 연간 60만원이 넘어서는 경우 교재비는 수익자부담으로 하도록 함
  - 자유수강권에 선정된 학생은 성실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지도 바라며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자유수강권 수업을 포기할 경우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짐.
  - 늘봄학교가 적용되는 1학년은 늘봄지원비(월10만원)에 자유수강권이 추가 지원됨

#### 다. 돌봄교실

- 1) 운영기간 : 2024년 1-2학년 개학일 ~ 2025년 2월 (방학 중에도 운영)
- 2) 운영시간
- 가) 학기 중
  - 평일 오후반 (2개 반) 1:40 ~ 5:40
- 나) 방학 중

- 오전반 : 09:00 ~ 13:00 - 종일반 : 09:00 ~ 16:00

- 3) 대상
- 가) 1~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으로 구성
- 나) 교육비지원대상자 중 맞벌이 가정, 교육비지원대상자, 맞벌이 가정 순으로 선정
- 4) 프로그램 운영
- 돌봄교실(오후반) : 교과 보충지도, 독후활동, 미술창의활동, 교구·놀이활동, 체육활동 등

###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 가. 운영목표

- 학생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 성장 지원
- ㅇ 학교 교육복지 문화 조성
- ㅇ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 운영
- o 학교-지역 교육복지공동체 조성

### 나. 사업별 추진내용

프로그램	세부내용
학생별 특성 및 욕구 파악	(신입생)  ○대상: 법정저소득 학생 및 담임추천 학생  ○자료: 학생이해자료(담임용)  ○학생면담을 통한 기초조사 및 욕구 조사  -도구: 간단한 자기소개지 활용  -시간: 방과후(돌봄 학생) 시간, 점심시간  ○가정방문(학부모 면담, 가정환경 파악)  -법정 저소득학생→담임추천학생 순으로 방문 (가정방문 거부시 전화상담으로 대체) (재학생)  ○대상  -2~6학년 대상학생(집중, 우선지원 학생) 중 정보파악이 미흡한 학생  -대상학생으로 새롭게 선정된 학생, 전입학생, 담임추천학생(기존학생 중 위생, 학교생활, 또래관계 등 새로운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학생면담(욕구파악)  -자기소개지, 문장완성검사지 활용  ○담임면담 및 가정방문  -집중지원→우선지원→지원학생→담임추천순으로 실시
지원 순위 결정 및 학생 특성별 분류	○동학년 협의회 -1차(5월): 대상학생 지원순위 최종 확정 및 학생 특성별 분류,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2차(11월): 모니터링 및 평가(지원순위 조정, 대상학생 추가, 삭제, 차기년도 계획 수립) ○사례관리팀 - 집중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개입 계획 협의
가정 방문	○동학년 협의회를 통해 가정방문 대상학생 선정 -학생 중 가정방문이 필요한 가정 상시운영 ○가정방문 대상학생별 담임, 교감, 교육복지담당교사, 지역기관 담당자와 동행
Finding 프로 그램	<ul> <li>○몸으로 말해요(1학년)</li> <li>-1학년 3개 학급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전문강사와 담임, 교육복지사가 함께 참여하여 또 래관계 및 사회성 발달 정도,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파악 ※집단상담(동작테라피), 사제멘토링, 행복동행과 연계</li> <li>○도란도란 이야기방(1-6학년)</li> <li>-교육복지대상학생 1:1 면담</li> <li>-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활용</li> <li>(담임선생님과 협의 후 수업 중 실시 가능)</li> </ul>
개인상담	○부모의 자녀양육 어려움으로 인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서적지지 필요 학생

	○학습의욕이 없으며 또래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친구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독단적으로 행동하려는 학생						
	o학생의 가정상황과 관련하여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학생						
	○인지적, 정서적 발달수준이 낮아 산만하고 학교수업이 어려운 학생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						
'마음	o자기표현 및 자기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프로그램						
톡톡'	-애니메이션에 대한 강점이 있는 학생들의 욕구반영으로 나의 이야기를 애니메						
집단상담	이션으로 그려봄으로써 자기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						
언어치료	○낮은 어휘능력 및 낮은 언어이해능력으로 인해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 생						
그림책을	o이해력 부족으로 학습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소집단 프로그램 운영						
통한	-이해하기 쉬운 그림동화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읽기에 대한 편안함 제공						
자기표현	-동화 주제를 바탕으로 동화속 인물과 마음을 나누는 활동으로 자기 표현력 향						
집단상담	상						
'행복교감 ,	-여름방학 중 가정환경으로 인해 여행 또는 체험활동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 적 기회 제공						
방학교실	-학생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제별 전문적 활동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경험함 -굿네이버스 기관과 연계한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슬기로운	-욕구는 있으나 가정환경의 열악으로 진로에 대한 제한적 상황이 있는 학생						
주말'	-고학년군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주말 프로그램 운영						
여가생활	-주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가선용에 대한 궁적적인 경험 기회 제공						
사제 멘토링	○집중지원, 우선지원 학생에 대한 학교적응력 향상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1:1 또는 1:2 담임교사와의 밀접한 관계형성을 통한 정서적지지 ○상담, 학습(교과지도), 체험활동, 또래간 관계형성 등의 활동						
	○가족상담 및 가족응집력 향상 프로그램						
	-학교 및 기관의 도움으로 가족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가정						
Oh!,	-자녀와의 대화법 및 감정코칭						
my family	-우리가족 성격유형 알아보기						
가족지원	-가족체험: 가족별 상황과 욕구에 맞춰 제공(도자기, 케잌, 목공예 등)						
사업	-가족상담: 전문적인 상담기관과 연계						
	학교, 상담기관, 가정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가족별 시간과 상황에						
	맞춰 진행						
	o '스카이스타' 밴드동아리						
	-동아리지도: 외부강사						
	-대상: 5~6학년 15명						
'Dream	-2024년 밴드동아리 음악회 공연						
Up'	-음악회 공연무대 장식 및 초대장 만들기 등을 통해 자발성 및 자신감, 책임감 향						
학생	상						
자율	│ ○자발적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명: 댄스동아리, 자원봉사 동아리						
	-동아리지도: 내부교사						
	-넘치는 에너지를 학급내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풀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신체활동 에너지 발산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학생들로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								
		-대상: 4~5학년 22명						
개	별지원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지원이 가정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례관리팀 회의를 통해 지원 (예: 안경, 병원진료, 계절의류 등)						
사	레회의	○교내사례관리협의회-3월: 집중지원학생 7명에 대한 개입 내용 공유 및 추가 개입내용 협의(우선지원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및 추가개입 협의)-5월: 신입생(집중지원학생)에 대한 사례개입 계획 협의-9월: 모니터링-12월: 개입평가 및 차기계획 협의○교외사례관리협의회-긴급사안 발생시 수시로 실시						
긴·	급지원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지원이 가정 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례관리팀 회의를 통해 지원(예: 병원진료, 계절의류 등) ○의식주와 관련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 일시적 긴급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사례관리팀 회의를 통해 지원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지원						
성장학급 지원		○스마트폰 게임 예방지원(1~2학년) -동학년 협의회시 학년 특성 반영한 학급지원 ○언어문화개선 -학급내 거친말과 행동들을 보이는 대상학생이 있는 학급, 또는 원활한 또래관계형성이 필요한 학년 -언어문화개선 학급교육 4회기						
여교내사례관리협의회         -3월: 집중지원학생 7명에 대한 개입 내용 공유 및 추가 개입내용 협의(우/사례 대한 프로그램 및 추가개입 협의)         관리 등월: 신입생(집중지원학생)에 대한 사례개입 계획 협의         협의 회의         의의의 기의         회의 -12월: 개입평가 및 차기계획 협의         이교외사례관리협의회         -긴급사안 발생시 수시로 실시		-3월: 집중지원학생 7명에 대한 개입 내용 공유 및 추가 개입내용 협의(우선지원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및 추가개입 협의) -5월: 신입생(집중지원학생)에 대한 사례개입 계획 협의 -9월: 모니터링 -12월: 개입평가 및 차기계획 협의 o교외사례관리협의회						
	학년 협의 회	○동학년 협의회(연 2회) -1차(5월): 대상학생 지원순위 최종 확정 및 학생특성별 분류,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2차(7월): 중간모니터링 -3차(11월): 모니터링 및 평가(지원순위 조정, 대상학생 추가, 삭제, 차기년도 계획 수립)						

### Ⅲ.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 1. 학교폭력의 정의

#### 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조1항-

#### 나, 학교폭력 유형



#### 다. 학교폭력 징후

#### (1) 피해학생의 징후

- ① 지각이나 결석이 잦습니다.
- ②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 ③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 ④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 (2) 가해학생의 징후

- 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 ②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합니다.
- ③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 라.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자녀 대화 기술

- ①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하고 공감하고 지지해 주세요.
- ② 다그치면 더 숨깁니다. 야단치지 말고 차분하고 따뜻하게 얘기하세요.
- ③ 용기 내어 얘기한 자녀를 칭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하세요.

#### 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에서의 학부모의 역할

- ①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②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③ 평소,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④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방법,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기 등 아이들 눈높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 ⑤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주위(선생님, 부모님,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⑥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 ⑦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 바. 학부모님을 위한 [학부모On누리]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 안내

- ① 학부모ON누리 접속 http://www.parents.go.kr/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우측 상단의 [온라인교육과정]을 클릭, 관심 과목 수강신청하기
- ③ 예)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자녀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 2.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 임기: 교원은 근무기간, 학부모는 자녀 재학기간
- 전담기구 개최 정족수는 별도의 규정 없음
-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
- 학교 간 폭력 발생 시 어느 한 곳이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로 회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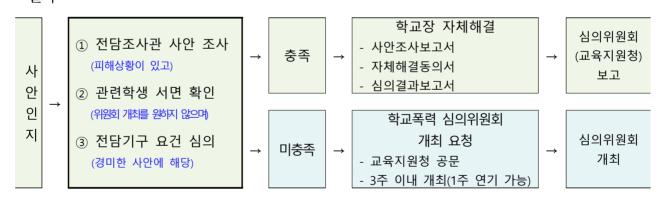
#### 3.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

- 목적: 피·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 학교폭력 재발방지 및 공동체성 회복
- 대상: 관련 학생 측 모두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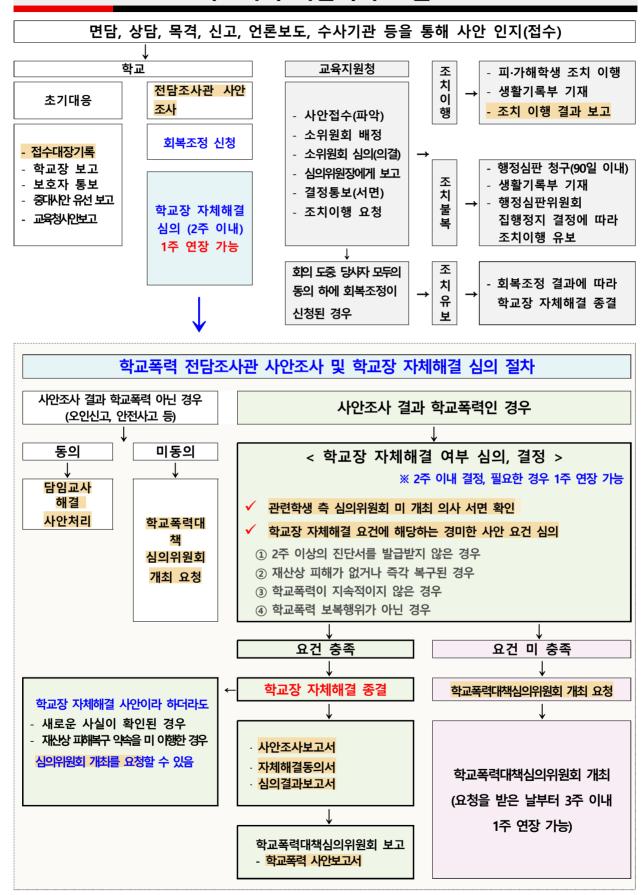
☆ 경미한 사안 기준 ☆

-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 - 절차



###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 4.성비위(성폭력·성추행·성희롱·성매매) 예방

성폭력(성희롱 · 성추행 · 성매매) 가해자는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의 청소년 성폭력은 학생들의 집, 학교 등 학생들과 근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 되기 때문에 가정,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예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가.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 행동은?

- 야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을 카카오톡, 밴드로 보내기
- 성장이 빠른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언급하기
- 장난치는 척하면서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지기
-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폭력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나.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지침 및 준수사항

- 1)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자녀의 안전을 지킵니다.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 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 3)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봅니다.
- 4)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면 참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 5) 위험상항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가르쳐줍니다.
- 6)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매매 제안이나 유인만 해도 처벌됩니다.
- 7)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발견하면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 8) 부모님께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줍니다.

#### 다. 성폭력 후 대처 및 피해 상담 및 지원센터

성폭력을 겪었을 때에는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믿을 만한 사람이나 전문상담기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한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 ▶ 증거물을 씻거나 없애지 말고 봉투에 넣어 잘 보관합니다.
  - -입었던 옷과 속옷, 가해자의 증거물로 챙길 수 있는 것
-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 및 증거 채취를 합니다.
  -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1366문의)이나 ONE-STOP지원센터를 이용
- ▶ 의학적, 심리적, 법률적 조취를 취합니다.
- 신고전화 : 관할경찰서 국번없이 112
- 청소년 긴급전화 1388 : 성폭력 피해 관련 긴급 위기상담 및 신고전화
- 사이버수사대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접속후 사이버 범죄신고
- 성범죄 알림e 활용: 가정 및 학교 근처 성범죄자 인적사항 확인 가능

- 전북서부해바라기 센터 :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1층, ☎ 063-859-1375

- 익산성폭력 상담소 : ☎ 063-834-1366

#### 라. 디지털 성범죄란?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혹은 그것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불법촬영이나 소비(불법촬영물을 보는 것) 또는 복사를 말합니다.

- ▶ 디지털 세상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 1) 피해 알아차리기
- 2) 상담하기 "말해도 괜찮아"
- 3) 신고하기: 도와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경찰, 등등)
- 4) 디지털범죄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는 곳
  -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https://www.women1366.kr/stopds)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긴급전화 1366

#### 마. 성매매 예방

▶ 청소년 성매매 제대로 알기

청소년 성매매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위해 금전이나 다른 대가로 유인하여 실행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에는 보통 5가지 경로가 있다. (가출, 인신매매, 사이버공간, 친구의 유혹, 전단지)

▶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는 사이버 공간이다. 채팅 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대화방을 열거나 쪽 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성매매 제의가 오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내가 청소년이라면?

- ▶<mark>청소년 성매매예</mark>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 ▶호기심으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만남 갖지 않기
- ▶알바 구할 때, 알바비(급여) 먼저 주는데 가지 않기
- ▶시급이 높은 사기광고에 속지 않기
-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에게 관심 갖기
- ▶돈에 대한 건전한 사고방식 갖기
- ▶성매매 알선 및 권유행위 신고하기

#### 내가 어른이라면?

- ▶불건전한 접대문화, 향락문화 거부하기, 바꾸기
- ▶인터넷 성매매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기
- ▶주변의 유해환경 및 유흥업소 감시 및 신고하기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신고활동 등 청소년 성매매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 ▶성매매 알선 및 권유행위 신고하기

#### 신고하기

- ▶신고전화: 관할경찰서 국번없이 112
- ▶사이버수사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접속 후 사이버범죄신고

#### 5.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 가. 아동인권이란?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담고 있는 국제적인 약속" <UN아동 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제3조

#### 나, 아동의 4가지 권리



#### 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라. 아동학대범죄란?

- 1)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 2)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 (신체, 정서, 성,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 3)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 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 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과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마. 아동학대의 후유증

#### 신체한대

-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을 야기함.
-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임.
- ·성인기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을 높임.
-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 수면장에, 약물중독,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침.

#### 방임

-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함.
- ·영유아기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함.
- ·저학년기 학습 준비도가 떨어짐.

#### 정서한대

- ·유아기의 정서학대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게 함.
- · 낮은 자아 존중감, 의존성, 우울증, 도벽, 거짓말, 낮은 학업 성취,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 행동과의 관계가 입증되고 있음.
- · 가정폭력,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이 가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남.

#### 성학대

- ·신체적 상해 이외의 자해, 우울증, 자아 존중감 상실, 성충동 조절의 문제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음.
- · 아동의 나이, 지속기간, 학대수준, 고의성. 위협이나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성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됨.

#### 바.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 1)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 2)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 3)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 4)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 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내

1) 아동학대치사(제4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아동학대중상해(5조) : 3년 이상의 징역

#### 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 1)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생활을 합니다.
- 2)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 학교 Wee클래스나 각 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 신청
- 3)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
- 4)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Ⅳ. 인권 교육

#### 1. 인권과 인권교육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 등의 모두를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인권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권교육이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 인간의 인성과 그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인종과 국가, 민족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사회의 모든 집단 간의 이해와 관용과 평등 그리고 우호의 증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이 되어 야 하며 학교를 비롯한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훈련 등의 공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제도, 가족, 매스미디어 등 비공식 학습의 모든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2.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 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3. 가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兩性平等)이란,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 ※ 자녀 양육·교육에 있어서 평등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합니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 진로, 학업 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배제되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딸들에 대해서는 예의바른 행동과 여성스러운 행동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인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 4. 가정에서의 흡연 예방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가. 학교전체 ·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u>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역구역입니다.</u> 교직원은 물론이고 공휴일 학교시설 이용자, 학교방문객 및 학부모 등 <u>모두에게 흡연이 금지</u>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나. 청소년 흡연과 건강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에는 벤젠, 카드뮴 등과 같은 <u>제1군 발암물질</u>을 포함하여 69종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4,000여종의 독성 및 유해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다른 약물 중독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담배에 일찍 노출될수록 중독 위험과 각종 질병, 암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 다. 흡연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1) 금연 가정의 자녀들은 나중에 흡연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 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 2)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습니다.
- 3) 어른이 되면 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4) 자녀들과 외식 시에는 금연 지정 음식점을 이용합니다.

#### 라, 약물 오남용 예방

- (1) 의약품을 바르게 사용하기
  - 약물의 올바른 복용법(용량, 시간, 보관)을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은 과감하게 폐기합니다.
- (2) 마약류등 중독제 남용 예방(마약류, 술, 담배, 카페인, 흡입제의 중독)
  -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 중독제를 권하는 친구들의 만남과 모임은 피하기
  - 중독제의 해로움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처하기
  - 중독에 대처하는 방법

- 커피, 초콜릿, 탄산음료, 이온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삼가
- 중독제에 의존하기 보다는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주위를 환기

#### 5.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 가.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확인하기

- 1)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 2)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설치: 우리동네 및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 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 권고
-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 5)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 6) 환지,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6. 통합교육 및 장애공감교육

## 1

#### 특수교육에서 말하는 통합교육 이란?

####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분리교육을 실시하여 또래 친구들과 필요한 수 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얻게 됨
- 2. 우리학교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바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배움

## 장애안 차별 금지법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 위반시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



####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 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 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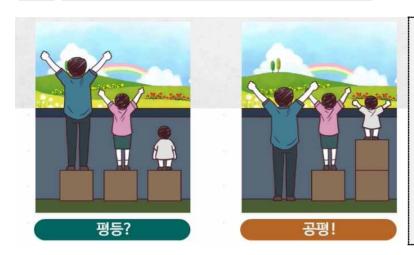
## 

####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 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 장애학생 대상 학교 폭력 징계는 일반 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 평등과 공평 인



평등은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에게 평등한 발판을 제공한다면 키가 작은 사람은 밖의 풍경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반면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에게 맞는 발판을 제공한다면 모든 사람이 멋진 밖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 Ш

#### 통합교육 0 & A!

- ◎ 선생님,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장애학생의 분리교육(특수학교나 전일제 특수학급)이 학습적인 면이나 감각적인 면에서는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목표는 개개인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장애학생들도 결국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부터 장애학생들을 통합시켜 교육해야 합니다.
- ™ 선생님, 장애학생이 통합학급(일반 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보다 특수학급에서 한 가지라도 더 배우는 것이 낫지 않나요?
  - 장애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수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수업시간에 지켜야할 예절 등을 익힙니다. 그리고 <u>또래 학생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가 장애학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u>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 ◎ 장애 진단을 받지 않고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누가 봐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호자에게 장애 진단을 받고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라고 강요함 수 있나요?
  -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보호자의 결정입니다.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장애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진단을 거부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장애정도가 심하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할 것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 ◎ 아이가 장애학생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뭐라고 말해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학생이 할 수 있는 것과 해내기 어려워하는 것을 살펴본 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장애학생에게 말을 할 때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장애학생을 도와 준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 V. 안전교육

**1. 목표**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안전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2. 운영방침

가. 안전교육은 '7대 안전교육표준안'을 기준으로 7개 영역, 51차시 이상으로 교과 또는 창의 적 체험활동 시간에 운영한다. - 7대 영역 및 시수 (51차시)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횟수	12차시 이상	11차시 이상	8차시 이상	10차시 이상	6차시 이상	2차시 이상	2차시 이상

- 학교 행사 및 담임교사 외 교육 (공통)

11 =1 ( 0 01)	اد الد الد	적용		용학년(시간)			.)	적용과목	학습주제	n) –
날짜(요일)	행사명	1	2	3	4	5	6	(영역)※예시	(영역)※예시	비고
3.4(월)	입학식 및 시업식	1	1	1	1	1	1	창체	생활	
3.6(수)	민방위 훈련(재난대비훈련)	1	1	1	1	1	1	창체	재난	
3월 3주	1학기 친구사랑주간 학교폭력예방교육	1	1	1	1	1	1	창체	폭력 및 신변	인성인권
3.29(금)	전교어린이회 조직	•			1	1	1	창체	생활	
4.2(화)	안전체험학습	•	4	•	•	•	•	과학2, 체육2,	교통(2),재난(2)	
4.17(수)	인선세임익급 	•	•		•	4	•	통합4	파중(2),세인(2)	
4월 3주	장애공감교육	1	1	1	1	1	1	도덕(창체)	폭력신변	인권
4.18(목)	   봄 현장체험학습	•	•		2	2	•	 -사회(통합)	생활(1),교통(1)	
4.19(금)		2	2	2	•	•	•	(오립)	r .	
5.14(화)	민방위 훈련	1	1	1	1	1	1	창체	재난	
5.27(월)~5.28(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		10	사회4, 국어4, 도덕2	생활(4),교통(4), 폭력신변(2)	
5.27(월)~5.31(금)	스러워코크			6		•		체육(창체)	생활(3)응급처치(3)	
6.10(월)~6.14(금)	수영안전교육	•			6			체육(창체)	생활(3)응급처치(3)	
7.26(금)	여름방학식	1	1	1	1	1	1	창체	생활	
8.21(수)	여름개학식	1	1	1	1	1	1	창체	생활	
9월 1주	2학기 친구사랑주간 학교폭력예방교육	1	1	1	1	1	1	창체	폭력신변	인성인권
10.15(화)	기 이 원기 위원 참.스			2	2	2		가 된 / 트 됨.\	계청/1) 그ㅌ/1)	
10.18(금)	가을 현장체험학습	2	2			•	2	사회(통합)	생활(1),교통(1)	
10월 4주	장애공감교육	1	1	1	1	1	1	도덕(창체)	폭력신변	인권
8월(미정)	민방위 훈련(공습대비훈련)	1	1	1	1	1	1	창체	재난	
11월(미정)	민방위 훈련(재난대비훈련)	1	1	1	1	1	1	창체	재난	
미정	심폐소생술 교육					2	2	창체(보건)	응급처치	보건
12.30(월)	겨울방학식	1	1	1	1	1	1	창체	생활	
2.3(월)	겨울개학식	1	1	1	1	1	1	창체	생활	
2.7(금) 종업식 및 졸업식			1 22	1	1	1	1	창체	생활	
학교 공통 교육				24	25	25	29	※학년 수준, 권장시간에 따라 재구성 가능		
그 외 학년별 교육	사(※학급교육과정에 수록)	33 51	29	27	26	26	22	※실험실습·체육 및 ㅊ		
합 계			51	51	51	51	51	※학급교육과정에 세년	후 연간지도계획 수록	r

나. 학교 행사활동(민방위훈련, 재난한국훈련, 화재대피훈련 포함)과 보건교육과정(성폭력, 응급처치, 학교폭력, 신변안전, 재난안전 등)에서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안전교육시간에 포함시키고, 그 외 시간은 학급교육과정 연간지도계획에 편성하여 수록한다. 다. 생애 주기별 체험형 안전교육(2·5학년, 전북119안전체험관), 생존수영교육(3·4학년: 10시간), 야 외활동(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실시하기 전에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Ⅵ.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 만들기

### 청탁금지법 정착 및 불법찬조금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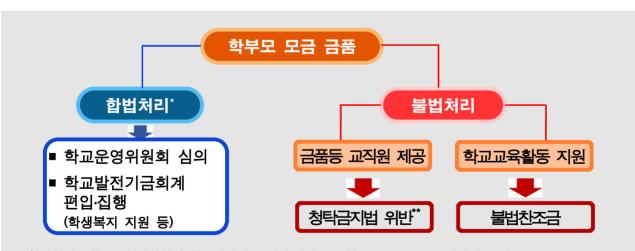
#### │.「청탁금지법」과 불법찬조금의 개념

#### 1. 청탁금지법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교직원) 및 제공한 자(학부모 등)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특히, 학생·학부모와 담임교사(학생 수업 교사 등 포함)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시 처벌
- o 학부모: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o 교사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징계

#### 2. 불법찬조금



- \* 합법처리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심의.의결을 통한 모금금품 또는 자발적 조성금품 (학생복지 지원 및 교육활동비 지원 등의 조성 가능, 교직원복지비 명목으로 조성 불가)
- \*\* 청탁금지법 위반 : 학교발전기금 조성 목적과 합법적인 절차를 벗어난 학부모 모금금품이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수수한 교직원 및 제공한 학부모 모두 처벌 : 2~5배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교직원-징계 의무)
- \*\*\* 불법찬조금 : 학부모 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활동지원 명목으로 학부모 로부터 임의 할당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Ⅱ.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불법찬조금 처분 사례

### ○ 2020년도 \*\*교육청 사례

구분	사건내용	수사·재판 결과						
	<ul> <li>○ 2020년 2월 경 학생상담을 요청한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li> <li>후, 쇼핑백을 놓고 감.</li> <li>○ 교사가 쇼핑백(현금20만원)을 확인하고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li> <li>○ 청탁방지담당관은 지방법원에 위반사실 통보</li> <li>○ 2020년 3월 경 학부모가 교사에게 휴대폰 문자이미지로</li> </ul>	○ 교사 자진신고 ○ 학부모: 과태료 부과 (2배, 40만원)						
청탁 금지법 위반 사례	커피전문점 기프티콘을 보냄 ○ 교사는 문자 확인 후 즉시 이미지 자료 확보 및 삭제처리,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청탁방지담당관은 지방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 교사 자진신고 ○ 학부모: 과태료 부과요청						
(금품 수수)	<ul> <li>※ 휴대폰 문자 이미지는 취소나 환불 처리가 불가하여 삭제처리</li> <li>○ 2020년 6월 학부모가 돌봄전담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9,800원 상당)을 보냄</li> <li>○ 돌봄전담사는 카카오톡을 확인 후 즉시 취소/환불처리,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신고</li> <li>○ 청탁방지담당관은 지방법원에 위반사실 통보</li> </ul>	○ 돌봄전담사 자진신고 ○ 학부모:과태료 부과 요청 ○ 교사: 징계요청						
	○ 교사A는 학부모들로부터 명품가방, 상품권, 본인 축의금 등 약 2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 학부모: 과태료 부과 요청 예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직자(교직원)는 금품등을 수수 한 경우, 제공자(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의무사항), 만약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됨								
불법 찬조금 사례	1인당 325처워씩 모금한 종 780만워읔 야구부	○ 부산지방검찰청 고발 ○ 관련자 징계요청 및 수사 중						

\_\_\_\_ 불법찬조금(촌지) 등 부패 관련사항 신고

#### ◇ 부패신고 문의처

- 이리동북초등학교 교무실 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 교감 신옥주 ☎ 063-857-1281

### VII. 교육활동 침해 예방

#### 1.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 공무방해(업무방해): 국·공립학교(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명예훼손:**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모욕:**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협박: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폭행**: 사람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행위
- 상해: 폭행으로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 **손괴:** 타인의 물건,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성폭력 범죄 행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불법정보 유통 행위:**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교육활동을 침해 하는 행위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동성간에도 인정될 수 있음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반복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등 무단 배포 행위: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수업 중 이석하거나, 수업도구를 던지는 등 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무고:** 교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을 괴롭히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특이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법령에 따른 학생교육, 생활 지도 등의 임무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3. 학부모 의견 제시에 관하여

가. 의견 제시 및 정보 제공 요청

-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
  - 「교육기본법」제13조제2항
- 자녀 등 피보호자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짐 「교육기본법」제13조제2항
-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학칙의 제·개정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4항

#### 나. 상담 요청 및 이의 제기

- 상담(「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0조)
  -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요청 할 수 있음
  -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함(단,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담 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은 예외로 함)
  - 상담의 일시 및 방법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함
    - → 본교 학교홈페이지의 '학교소개' 메뉴 하단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메뉴 활용
- 이의 제기(「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7조)
  -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함(단,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

#### 4.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하면 안되는 이유



- 학생들의 인성에 위협이 가해짐
-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짐



#### 5.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 필요

- 학생 인권과 교원의 교육권은 서로 존중하고 윈윈(win-win) 하는 관계
- 교원과 학부모의 신뢰와 존중
  -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한 전제조건
  -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전인적인 성장으로 이어짐
- 교원과 학부모: 학생을 키우는 새로운 부부와 같음
- 교원과 학부모 역할의 연대가 중요함

